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2. . .	
연월일	(제 회)	

국 민 건 강 보 험 요 양 급 여 기 준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 분야, 질환,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관, 질병 등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u>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u> <u>분야, 질환, 환자의 특성 등을 고</u> <u>려하여 별도로 고시한 의료기관,</u> <u>질병 등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의</u> <u>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u> <u>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u> <u>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u> <u>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u> <u>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u> <u>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u> <u>관리하여야 한다.</u>